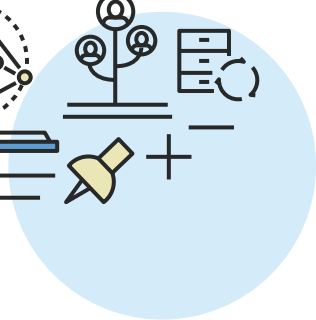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속세·증여세 꿀팁

알아두면 좋은 증여세 절세 꿀팁

1.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합산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은 증여로 간주

출처별 인정되는 금액 및 근거자료를 참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금출처 인정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기타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현금·예금 수증액	증여재산가액	통장사본

3.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으려면

- ①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공증을 받을 것
- ② 계약상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

(*1) 이자지급 여력이 없는 채무자라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음

(*2)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

4.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는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선택

통상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절세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증여자의 재산보유현황에 따라 증과세가 적용되므로 Case별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5. 향후 가치상승폭이 큰 재산은 사전에 증여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이뤄지면 사전 증여재산이 합산되긴 하지만, 가치 상승 전 증여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가치 상승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부터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6. 사위나 며느리를 증여 대상으로 활용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이므로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만 공제가 되나(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공제) 10년 내 합산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5년 후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 딸에게 각각 6억원씩 증여해둔 상태에서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하고, 7년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Case 별 부담세액

구분	CASE 1 아들/딸에게 추가 증여	CASE 2 며느리/사위에게 증여
증여시점	3천만원	900만원
상속시점	1천만원	없음
총부담세액	총 4천만원	총 900만원

알아두면 좋은 상속세 절세 꿀팁

1. 낼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낼 것이 없더라도 우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예) 상속기일 후 12년째 되던 날에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 기존에 신고했을 경우: 추가 세액 없음
- 기존에 무신고한 경우: 세액 발생

2.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

상속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 하게 되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이 아닌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상속개시일에 인접한 재산 처분 및 인출은 만전을 기할 것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구체적인 용처를 입증하여야 추정상속재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상속시 임대용 부동산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계산시 채무액으로 공제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 피상속인 부채에 대한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이자지급 서류 등은 미리 확보

피상속인의 채무는 모두 공제 가능하나,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미리미리 적격증빙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6. 부동산 양도 후 현금 상속 vs 부동산 상속 후 양도

부동산 상속 후 양도가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취득가액 2억원, 시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구분	CASE 1 부동산 양도 후 현금 상속	CASE 2 부동산 상속 후 양도
양도세(20% 가정)	2억원	-
상속세	-	-
취득세	-	19백만원
총부담세액	2억원	19백만원

상속세 / 증여세 세액산출 흐름도

상속세

① 총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 비과세재산	· 금양임야 · 묘토인 농지 등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증여재산	· 증여재산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포함)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평수수료 등
= ③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5억이하 : 20% · 5억 초과~10억이하 : 30% · 10억 초과~30억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④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산출세액의 30%(40%) 할증
- 세액공제 등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
+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⑤ 납부할 세액	

증여세

① 증여재산가액	· 증여 당시 시가
+ 10년 내 증여재산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기준]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창업자금 등: 5억원
= ③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5억이하 : 20% · 5억 초과~10억이하 : 30% · 10억 초과~30억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 10%
= ④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산출세액의 30%(40%) 할증
- 세액공제 등	· 신고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
+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⑤ 납부할 세액	